



21 언론대책위원회 보고

제108회기 언론대책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위원장 장학덕
서 기 조성민

1. 조직

1) 임 원

- 위원장: 장학덕
- 회 계: 김완겸
- 서 기: 조성민
- 총 무: 고상석

2) 위 원

배만석 김일영 홍승철 이순우 한병지 김미열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 일 시 : 2023. 10. 31.(화) 19:00
- ☞ 장 소 : 비대면회의
- ☞ 결의사항

- ① 전체위원이 소집자 배만석 목사에게 언론대책위원회 임원 조직을 일임하니 위원장 장학덕 목사, 서기 조성민 목사, 회계 김완겸 장로, 총무 고상석 목사로 하기로 하다.
- ② 차기회의는 추후 공지하기로 하다.

(2) 제2차 전체회의

- ☞ 일 시 : 2023. 12. 12.(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제108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의 건을 확인하다.
- ②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언론대책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하다.
- ③ 차기회의는 추후 공지하기로 하다.

2)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 일 시 : 2024. 7. 16.(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8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 건을 확인하다.
- ② 언론대책위원회 청원서 및 시행세칙 등 제109회 총회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다.

3. 최종 보고

1. 제108회 총회 수입사항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미연 방지나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설

2. 처리 내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언론대책위원회 운영세칙을 만들어 차기 회기 등 앞으로의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 언론대책위원회 운영세칙을 작성함.

3. 최종 결론

청원사항 및 별첨자료와 같이 본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변경 및 언론대책위원회 운영세칙을 시행토록 요청



청원서

수신: 총회장

참조: 서기

제목: 언론대책위원회 청원의 건

본 위원회는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미연 방지나 대응을 위해 제108회 총회에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권 중 하나인 소위 표현의 자유로 일컬어지는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본 교단 안에 기관지인 기독교신문을 비롯하여 여러 사설 언론사들의 노고로 저희들은 알 권리를 충족 받아 왔기에 여러모로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언론 보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어떤 동거나 의도를 갖고 허위조작 정보와 오정보를 교묘하게 보도함으로 정보의 진실을 가리며 피해를 주는 것들 말입니다.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 잘못된 정보를 주는 언론사에 대한 총회적인 대응이 없다면 이는 언론사뿐이 아닌 총회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회에 사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총회 임원회 급의 업무 지시 권한 또는 강제력, 재정이 있어야 하지만 특별위원회인 만큼 지시처리 권한이 없기에 아래와 같이 청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존속성이 없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언론대책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허락해 주셔서 총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로 발돋움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길 청원합니다.
2. 별첨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언론대책위원회 운영세칙”을 보고 드리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 장학덕
서기 조성민

언론대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교단의 위상을 하락시키는 잘못된 언론 보도(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들이 있다.

이에 본 시행세칙은 총회의 위상과 잘못된 언론 보도(가짜 뉴스)를 정정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절차

제2조(업무 처리 절차)

- ① 본 위원회는 가짜 뉴스 제보를 받되, 제보자는 해당 회기 총대로만 한정 하고, 해당 회기의 건에 대하여만 다루며 총회로 정식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첩된 건에 한해서 처리한다.
- ② 제보는 공문으로만 받으며 해당되는 기사 자료 및 내용(사실여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가짜 뉴스라 함은 개인이 작성한 인터넷 글이 아닌 정식 홈페이지(언론사) 및 지면 발행물, 유튜브(언론사 계정)에 실린 것을 말한다.
- ④ 위 ①에 의거 본 위원회로 이첩된 건이 있을시 회의를 소집하여 사실 확인을 한다.
- ⑤ 사실 확인을 위하여 언론 보도한 언론사 장 또는 기자를 회의에 참석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시 사실 진위를 파악할 동안 해당 언론사는 총회 출입 및 취재 제한을 총회 임원회에 요청한다.
- ⑥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나면 본 건에 대한 결론 보고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 ⑦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처벌 및 제재는 총회 임원회에 일임한다.
- ⑧ 가짜 뉴스가 아닌 정상적 보도였다면, 위 ①의 제보자를 회의 참석요청 하고 이에 불응할 시 제보자의 노회에 거짓 제보로 불필요한 업무 처리 비용(회의비 및 진행비)지출을 청구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 ⑨ 위 ①의 제보자가 회의에 참석시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본 위원회의 사실 확인된 내용을 확인해 주고 이에 따른 제보자의 확인을 받고 해당 처리 내용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 ⑩ 본 위원회는 시벌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접수되어 이첩된 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 한다.

부 칙

1. 본 운영세칙은 제108회 총회 결의로 언론대책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9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9월 23일 제109회 총회 제정